### 한국체육대학교 국제교류협력 규정

제정 2011. 1.25. 규칙 제543호 개정 2011.12.26. 규칙 제581호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·연구기관 등(이하 "외국기관"이라 한다)과 학술·체육교류 협정(이하 "교류협정"이라 한다) 체결 및 국제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가 외국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거나 기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.

### 제2장 국제교류심의위원회

- 제3조(설치) 외국기관과의 학술·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거나, 교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훈련처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와 서기를 둔다. 단, 임명직 위원은 기획처 소관 국제협력지원부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-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④ 간사는 기획팀장으로, 서기는 국제교류 담당직원으로 한다.

-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계획
  - 2. 교직원, 학생, 연구생 등의 교류
  - 3. 국제학술·체육교류 협정 체결
  - 4. 기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제6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하며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3장 국제교류협정 체결

- 제7조(대상기준)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기관으로 한다.
  - 1. 본교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기관
  - 2. 본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기관
  - 3. 본교 육성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외국기관
  - 4. 기타 대학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
- 제8조(체결권자) 교류협정은 총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9조(체결절차) ① 교류협정은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체결한다
  - ② 각 부서에서 교류협정 체결을 요청할 시에는 <별지 제1호>에 의거협정에 필요한 서류를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외국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체결목적, 기관현황, 협정내용, 협정서(안)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체결한다.
- 제10조(보고 및 관리) ① 협정서의 언어는 영어 또는 자국어를 사용하고 쌍방기관이 협정서 원본 각 1부를 보관한다.
  - ② 교류협정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문서는 기획처에서 처리한다.

#### 제4장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

- 제11조(교류의 종류)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기관(이하 "협정기관"이라 한다)에 교류할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국제 학술·문화교류
  - 2. 교환학생 교류
  - 3. 학생 합동훈련
  - 4. 기타 교직원 및 학생 교류
- 제12조(교류시기 및 기간) ① 협정기관과의 문화교류는 방학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교류기간은 양 기관의 교류사업별 일정에 의한다. 단, 교환학생 교류는 1년 단위로 한다.
- 제13조(자격 및 선발) 협정기관에 교류할 교직원 및 학생의 선발은 기획처에서 총괄하되, 부서단위 교류는 부서별 자체계획에 의한다.
- 제14조(경비지원 등) ① 협정기관에 교류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협정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② 본교를 방문하는 협정기관의 방문자 경비는 체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학술대회 참가 등 공식적인 초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③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교류 경비는 훈련처의 사업계획에 의한다.
  - ④ 교류경비를 지원받아 교류에 참가한 교직원 및 학생은 교류종료 후 7일 이내에 교류결과보고서<별지 제2호>를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. 단, 합동훈련, 문화교류 등 소속부서에서 실시하는 교류는 자체 계획에 따른다.
- 제15조(외국인숙소 이용 등) ① 외국인숙소의 이용은 협정기관, 인원, 일정, 사용신청 등을 고려하여 기획처에서 배정한다.
  - ② 외국인숙소 및 생활관 식당 이용 등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협정기관과의 교류) 비 협정기관과의 교류 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.

#### 제5장 국제홍보위원

- 제17조(국제홍보위원) ① 본교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제 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국제홍보위원은 체육이나 교육 분야의 국내·외 전문가 또는 주요 국제 대회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.
  - ③ 국제홍보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18조(임무) 국제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 - 1.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2. 유학생 유치 등에 관한 사항
  - 3. 기타 대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
- 제19조(임명의 취소 또는 해촉) 국제홍보위원이 재임 중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- 제2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543호, 2011. 1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581호, 2011. 12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국제교류협정 체결 신청서

| 체결기관  |             |  |  |  |
|---|-------------|--|--|--|
| 체결목적  |             |  |  |  |
| 기관현황  |             |  |  |  |
| 협정내용  |             |  |  |  |
| 협정서(안)  | 별도 첨부       |  |  |  |
| 한국체육대학교 국제교류협력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국제교류협정<br>체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|             |  |  |  |
|   | 20          |  |  |  |
|   | 부서장 ○○○(서명) |  |  |  |
|   |             |  |  |  |
|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|             |  |  |  |
| ※ 붙임: 국제교류협정서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|  |

# 국제교류 결과 보고서

| 교류종류 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
|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--|
| 교류기간  |      | 교류국 |            |  |
| 교 류 자  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
| 주요일정 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
| 개선 또는<br>건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
| 한국체육대학교 국제교류협력규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국제교류결과<br>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
|   | 20 . |     |            |  |
|   |      | 부서장 | ○ ○ ○ (서명) |  |
|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
| ※ 관련서류 첨부   |      |     |            |  |